

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진삼 의원)

의안 번호	42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4월 29일

발의자: 남진삼 의원

찬성자: 박춘희, 김성기, 김광성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(표창)에 따라,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고, 조례 전반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표창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규정(안 제5조)
- 모범공무원 포상 조문 신설(안 제7조의 2)
- 자구 수정 및 현실과 맞지않는 조문 정리(안 제5조 ~ 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
- 예산조치: 불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「붙임 1」 조례안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모범공무원 포상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표창대상자”를 “대상자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람”을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효자, 효부, 열녀, 그 밖의 선행자”를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,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사람”을 각각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감사장 및 공로상 등)”을 “(감사장 및 공로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로상”을 “감사장 및 공로상”으로, “사람”을 “대상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경우”를 “때”로 하고, 같은 호 및 제3호 중 “사람”을 각각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4.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
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모범공무원 포상) 모범공무원 포상은 「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

상 운영 규칙」에 따라 운영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표창예정”을 “표창 예정일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은”을 “대상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사람”을 각각 “경우”로 한다.

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감사장 및 공로상

제1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표창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의회의사담당 주사가 된다”를 “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종류)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 략) <u>5. 그 밖에 기념패</u>	제5조(종류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모범공무원 포상</u>
제6조(표창장 및 상장)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대상자에게 수여 한다. <u>다만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 등을 포함 한다.</u> 1.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 양한 <u>사람</u> 2.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<u>효자, 효부, 열녀, 그 밖의 선 행자</u> 3.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<u>사람</u> 4. 현신적인 봉사로 군 지역사회에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<u>사람</u>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대상자에	제6조(표창장 및 상장) ① ----- ----- ----- <u>대상자</u> ---. <단서 삭제> 1. ----- ----- ----- -- <u>경우</u> 2. ----- ----- <u>경우</u> 3. ----- ----- <u>경우</u> 4. ----- ----- -- <u>경우</u> ② ----- -----

게 수여한다.

1. 각급학교의 교육 성적이나 학술·예술·체육, 그 밖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

2. 각종 품평회·경진대회·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사람

3. 그 밖에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등에 따라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

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창장과 상장의 수여는 군수 또는 해당 기관·단체 등의 장의 추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정 한다.

제7조(감사장 및 공로상 등)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의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 한다.

1. (생 략)

2.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

-----.

1. -----

-- 경우

2. -----

----- 경우

3. -----

-- 경우

<삭 제>

제7조(감사장 및 공로상) <삭

제>

감사장 및 공로상-----

-- 대상자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나 전출할 경우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3.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 운영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사람

4.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

③ 의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공로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실적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.

〈신 설〉

제8조(추천 등) ① (생략)
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 또는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표창예정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의장은 제7조에 따

----- 때 -----

----- 경우 -----

3. -----

경우

4.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에

해당하는 경우

〈삭 제〉

제7조의2(모범공무원 포상) 모범
공무원 포상은 「평창군의회 모
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」에
따라 운영한다.

제8조(추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표창 예정

일의 -----

---. 〈단서 삭제〉

른 감사장 및 공로상 등의 경우
에는 그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
라도 표창대상자로 할 수 있다.

제9조(제외대상) 제8조에 따라 추
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 중
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람은 공적심사 대상에서
제외한다.

1. 표창의 수공기간 1년 미만인
사람
2.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
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
은 사람
3.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
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
4. 공사(公私)생활이 문란하여
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
5. 군세를 장기체납 중에 있는
등 다른 군민의 모범이 되지
못하는 사람

제10조(공적심사) 의장은 제8조에
따라 추천 또는 요청을 받은 사
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적을
심사(이 조례에서 “공적심사”라
한다)하여 표창대상자를 선정한
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

제9조(제외 대상) -----

--- 대상자는 -----
-----.

1. -----
경우
2. -----

-- 경우
3. -----

----- 경우
4. -----

----- 경우
5. -----

----- 경우

제10조(공적심사) -----

--. -----

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(생 략)

2. 감사장 · 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

3. (생 략)

제11조(수여방법) ①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. 다만, 추천 또는 요청하는 기관 · 단체 등에서 부상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2조(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생 략)

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의회 의사담당 주사가 된다.

제17조(재발급 등) 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의 분실 · 파손 등 사유로 요청할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. 다만, 해당 패(牌)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감사장 및 공로상

3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수여방법) ① 표창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.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설치 및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의회
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.

제17조(재발급 등) ① -----
----- 사람 등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「붙임 2」 관련 법령

<지방공무원법>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모범공무원 표창(연 2명 이내)을 받은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1년간 지급 예정(총 240만원)
※ 규칙에 수당지급 내용 명문화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0